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29.(금) 08:00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등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등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등이 이상의 다등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 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 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현아 (044-202-3223)



## 붙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 □ (<mark>목적</mark>)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 □ (근거) 이용권 및 제공자 등록 등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적용
- □ (<mark>제공인력</mark>)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이수자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지원, 및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등
  - \* 하루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 □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 2024년 서비스 유형 >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단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인	10일	15일	20일
	인력 2인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3인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4인	15일	25일	40일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2~52% 존재(소득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상이)

< 2024년 서비스 가격(1일 가격) >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137,600원	172,000원(인력 1명)	344,000원(인력 2명)	371,200원(인력 2명)	
	265,600원(인력 2명)	398,400원(인력 3명)	531,200원(인력 4명)	